

미래창조과학부 중장기계획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권성훈

Tel. 788-4716/Fax. 788-4719

E-mail: gwon@assembly.go.kr



# 요 약

## 질의 요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중장기계획의 현황, 근거 규정, 기존 논의, 주요국 동향, 개선방안

(회답일 2016.11.16)

## ■ 조사·분석 방향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중장기계획의 현황, 근거규정, 기존 논의, 주요국 동향, 개선방안을 조사 분석함

## ■ 주 요 내 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률은 66개며, 이 중 35개 법률에 총 42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수립한 과학기술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해 매년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다른 과학기술분야 계획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목 차

1. 조사·분석 방향 .....	1
2. 현황 .....	1
3. 주요국 동향 .....	4
1) 미국 .....	4
2) 일본 .....	5
3) 중국 .....	7
4. 기존 논의 .....	9
5. 개선방안 .....	10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조사·분석 방향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중장기계획의 현황, 근거규정, 기존 논의, 주요국 동향, 개선방안을 조사·분석함

## 2.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률은 66개며<sup>1)</sup>, 이 중 35개 법률에 총 42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음([표 1])

[표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률과 중장기계획 근거규정

법률	중장기계획	근거조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제4조의2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계획	제7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8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없음)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제5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없음)	-
광주과학기술원법	(없음)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제4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성과평가기본계획	제5조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제12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제6조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제30조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제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제8조
기술사법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제5조

1)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검색일: 2016.11.15.), <<http://www.law.go.kr/>>.

법률	중장기계획	근거조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제5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4조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제5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없음)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	제3조
방송법	(없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기본계획	제8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제35조
별정우체국법	(없음)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제3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없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제4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제7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4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육성종합계획	제6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제4조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제6조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제5조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제5조의3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제15조
우주손해배상법	(없음)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없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없음)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없음)	-
우편대체법	(없음)	-
우편법	(없음)	-

법률	중장기계획	근거조항
우편환법	(없음)	-
울산과학기술원법	(없음)	-
원자력 진흥법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9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없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없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 개발·이용촉진·관리 기본계획	제5조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계획	제5조
전기통신사업법	(없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없음)	-
전자서명법	(없음)	-
전파법	전파진흥기본계획	제8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제51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제5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없음)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없음)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5조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제8조
천문법	(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제10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제5조
통신비밀보호법	(없음)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없음)	-
표준시에 관한 법률	(없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없음)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없음)	-
한국연구재단법	(없음)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제4조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없음)	-

### 3. 주요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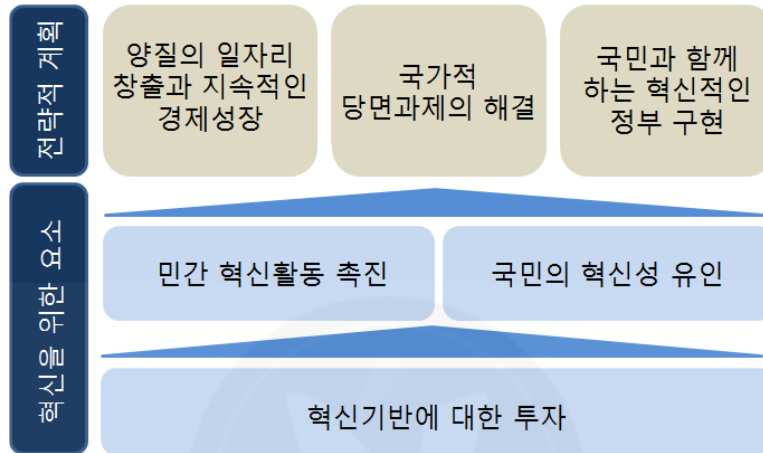
#### 1) 미국<sup>2)</sup>

- 2006년 1월 미국은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에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3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함
  - 물성과학·공학분야 등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기관(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 과학국(DoE SC), 상무부 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투자액을 두 배로 늘림
  -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지원의 영구화를 추진함
  - 청소년의 수학·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연간 80만 명의 근로자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함
  - 세계 경쟁력 우위의 지속적인 유지와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우주, 에너지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 2011년 2월 미국은 '미국혁신전략: 경제성장과 번영 확보'를 발표하여, 혁신의 역할, 민간부문의 중요성, 정부 역할 등을 제시함
  - 2009년 첫 발표 이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미국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것임
  - 혁신엔진이 민간부문에 있음을 직시하고, 민간 혁신 여건의 개선과 투자 확대 등 시장 중심 혁신전략을 강화함
    - 연구와 실험 세액 공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민간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투자를 유인하고자 함
- 2015년 10월 미국은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개정안을 발표함
  - '미국혁신전략'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했으며, 첫 발표(2009년) 이후 수정(2011년)을 거쳐 2015년 10월에 최종 개정안이 발표됨
  - '미국혁신전략' 개정안은 연방 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 계획으로 구성됨([그림 1])

2)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8; 차두원 등,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종합조정 2012-0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최종 검색일: 2016.11.15.), <<http://www.now.go.kr/>>.

- 혁신기반(Building Block)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제시함
-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의 3대 전략 계획을 수립함

[그림 1] '미국혁신전략' (2015.10) 구성



자료: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최종 검색일: 2016.11.15.), <<http://www.now.go.kr/>>.

## 2) 일본<sup>3)</sup>

-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창조입국(科學技術創造立國)'을 표방한 「과학기술기본법」과 이 법에 근거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발전해 왔음([표 2])
-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이념의 추이를 보면, 제1기에서는 '투자 확대'와 같은 양적 목표를 중시했다면, 제2기부터는 '새로운 지(知)의 창조'와 같은 질적이고 근원적인 목표를 중시하는 전환이 일어났음
  -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활동은 새로운 지식(지혜, 식견)의 창조 행위로서 그 자체로 존중되며 이러한 행위가 일본 사회를 활력 있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신뢰가 존재함
  - 그 배경에는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 수립 이후 연구개발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쟁적 연구 환경을 조성한 일본이 2000년대 초 유럽·미국과의 지식 격차를 줄이고 지식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맥락이 있음

3) 홍성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STEPI Insight』 제8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최종 검색일: 2016.11.15.), <<http://www.now.go.kr/>>.



[표 2]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념 변천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 (1996~2000)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경쟁적 자금'의 확충 - 포닥 1만 명 계획 - 산·학·관 인적 교류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01~2005)	3가지 기본 이념 - 새로운 知 창조 - 知에 의한 활력 창출 - 知에 의한 풍요로운 사회 創生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06~2010)	기본 자세와 이념 - 사회·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성과를 환원하는 과학기술 - 물건에서 사람으로, 기관에서 개인을 중요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1~2015)	기본 이념 - 과학기술 정책은 일본이 지향해야 할 모습의 실현에 이어지는 것

자료: 홍성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STEPI Insight』 제8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사회와 국민의 지지 및 과학기술 성과의 사회 환원 문제를 중시했고, 정책의 철학이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었음
  - 지식의 창조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한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달리,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혁신 성과의 사회 환원을 중요한 정책 이념으로 표방함
  -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을 그 자체로 중요한 지식창조, 가치창출 활동으로 존중하며, 이를 둘러싼 외부적 조건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성과의 환원을 강조한 것이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학기술투자 총액이 제1기 17조 엔에서, 제2기 21조 엔으로 증가했고, 제3기의 경우 25조 엔으로 증액을 계획한 상황이어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과학기술 지원의 정당성을 설득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임
  - '지(知)의 창조'를 최고의 이념으로 설정한 이후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은 물건, 조직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 종합정책으로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표방하여,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통합적 정책 이념을 제시함

- 2011년 초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민과의 소통,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 문제를 중시하여,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규정함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지향점을 일본이 지향해야 할 모습을 실현하는 데 두어, 과학기술과 국가의 공생 발전 필요성을 제기함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지진과 재해로부터의 부흥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 기초연구 강화 및 인재 중심의 정책 기조 유지,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국제적 연구 환경과 기반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15년 12월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과학기술 진흥 정책에 관한 지침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함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사회·경제·과학기술 부문의 글로벌 현황,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2011~2015년) 동안의 실적과 과제를 점검 하여 10년 앞을 전망하고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혁신기반 강화, 인재, 지식, 자본이 결집하는 장(場) 마련과 순환 시스템 구축, 사회·경제적 도전과제 대응, ICT를 기반으로 한 ‘초스마트 사회’ 실현 등을 제시함

### 3) 중국<sup>4)</sup>

- 2006년 2월 중국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을 발표함
  - ‘혁신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
  - 5대 중점 전략은 에너지 자원과 환경 보호 기술을 우선 순위로 선정, 장비 제조업과 정보산업에서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중국 산업 경쟁력 향상의 전환점 마련, 생물기술을 향후 중점 첨단기술산업으로 발전, 항공·해양기술의 신속한 발전 촉진,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연구의 강화 등임

4)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8; 임현 등, 『과학기술 장기비전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정책연구 2012-00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차두원 등,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종합조정 2012-0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홍성범, 「중국의 혁신드라이브 전략과 13차 5개년 계획」, 『과학기술정책』 217호, 2016.

- 2011년 3월 중국은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구조 조정,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 자원 절약형 사회 건설 등을 통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진함
  - 5대 기본 이념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 강화, 국민 일상에서 과학기술 혜택 향유, 장기 과학기술 역량 강화, 혁신의 제도화 및 개방 강화 등임
  - 7대 발전 목표는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 독자 기술개발 역량 제고, 과학기술과 시장경제 결합도 제고,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국민 체감도 제고, 혁신기지 건설, 과학기술 인재 육성, 과학기술혁신 체계 완비 등임
- 2011년 7월 중국 과학기술부는 ‘경제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의 후속으로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함
  - 이 계획은 혁신능력 강화, 성과의 상용화 확대, 국민으로의 성과 환원, 장기 과학기술 역량 강화, 혁신의 제도화, 개방강화 등 5개 기본이념과 7대 발전 목표로 구성됨
    - 7대 발전 목표는 연구개발투자의 대폭 확대, 독자 기술개발 능력 제고, 과학기술과 시장경제 결합도 제고, 혁신기지 건설, 과학기술 인재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및 메커니즘 완비 등임
- 2016년 3월 중국 발전개혁위는 ‘13차 5개년 계획’ 문서를 공식 발표함
  - 이 계획에는 경제, 사회, 과학기술, 교육 등 전 분야에 대한 2020년까지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 연구개발 집약도는 2015년 GDP의 2.1%에서 2020년 2.5%로, 만 명당 발명 특허 보유건수는 6.3건에서 12건으로 늘리기로 함
  - 이전 계획과 비교할 때 13차 5개년 계획의 특징은 ‘혁신(創新)<sup>5)</sup>을 강조한다는 점임
    - 중국 정부가 혁신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성장 방식의 한계 성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하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임
- 2016년 5월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혁신드라이브 발전전략 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를 발표함
  - 이 강요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혁신드라이브정책’의 액션프로

5) 중국은 innovation을 ‘창신(創新)’으로 표현하고 있고 일본식 한자인 ‘혁신(革新)’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innovation을 ‘혁신’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중국어의 ‘창신(創新)’을 ‘혁신’으로 번역함

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임

- 혁신 드라이브는 2개의 드라이브, 1개의 시스템, 6개의 변화 추진에 따라 진행됨
  - 2개의 드라이브란 우선 과학기술 혁신 실현과 체제 메커니즘 혁신 실현이며, 1개의 시스템은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6개의 변화란 성장 방식, 요소, 산업가치사슬, 혁신 능력, 자원배치, 주체 등에서의 변화를 말함

#### 4. 기존 논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수립한 과학기술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함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보고서에서는 매년 중장기계획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2014년 조사분석에서는 중복성 제거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계획 간 통합 또는 폐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권고함<sup>6)</sup>
  - ‘국토교통R&D 중장기전략’과 ‘건설교통R&D 혁신로드맵’을 통합하여 계획 간 중복성을 해소하고 추진동력을 강화하기를 권고함
  - 자체심의회기구가 없거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다부처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하도록 함
- 다만,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보고서의 권고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음

6) 정의영 등, 『201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 예컨대, 2013년도 조사분석에서 ‘전과진흥기본계획’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2014년 1월 수립된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음<sup>7)</sup>
- 한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들이 적시에 심의기구에 보고되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음<sup>8)</sup>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에는 계획 대상이 되는 시행기간이 이미 도래한 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되어 확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예컨대, ‘기초과학연구원 5개년 계획’의 경우 시행기간이 2013년부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에 확정되었으며,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은 2014년부터지만 같은 해 4월에 확정됨
  - 중장기계획의 확정이 지연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중장기계획이 부재한 상태가 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정책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5. 개선방안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근거를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각 중장기계획에 대해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반영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이 법적 근거 없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다른 과학기술분야 계획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예컨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7) 정의영 등, 『201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8) 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4.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8.
-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검색일: 2016.11.15.), <<http://www.law.go.kr/>>.
- 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4.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최종 검색일: 2016.11.15.), <<http://www.now.go.kr/>>.
- 임현 등, 『과학기술 장기비전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정책연구 2012-00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 정의영 등, 『201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 차두원 등,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종합조정 2012-0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 홍성범, 「중국의 혁신드라이브 전략과 13차 5개년 계획」, 『과학기술정책』 217호, 2016.
- 홍성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STEPI Insight』 제8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